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민

송주연 변호사

영주권 자격 무효

자격 취소 진행 시 이유 명시된 공지서 전달…반박 기회 보장

문: 영주권을 한번 획득한 후 자격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혹은 영주권자도 추방에 회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영주권자가 영주권 획득을 했다고 하여 추방에 회부되지 않거나 영주권 자격을 취소당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영주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애당초 영주권 승인이 되지 않았어야 했거나,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중대한 범죄 기록이 생기는 경우라면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추방이 될 수 있다. 만일, 영주권자가 이미 된 이후에 발생한 일로 인해 영주권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이 경우는 영주권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추방 재판에 회부하여 추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영주권자의 영주 자격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

는 방법의 하나로 취소하고자 하는 공지서를 전달해야 하며, 영주권을 획득한 후 5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민국에서 전달되는 영주권이 취소되어야 하는 공지서에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기본 정보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자격이 애초에 없었다는 판단을 이민국에서 하게 된 배경 정보 기재 ▶이민국의 판단을 반박할 수 있는 답변을 제출할 기회를 준다는 내용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는 이유를 뒷받침해 주는 관련 법과 규정이 명시 ▶취소 공지에 적힌 내용을 반박할 경우 어떤 선택이 있는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만일, 사기 행각이 드러나서 영주권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라면 이 내용이 취소 공지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사기 결혼으로 인해 영주권을 획득한 사실이 드러나 영주권 취소가 되는 경우라면, 영주권을 획득하는 시기에 진실한 혼인관계가 아니거나 사기 결혼이었다는

중앙상담실은 건강·법률·세무·보험·가정·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nyopinion@koreadailyny.com), 전화(718-361-7700)를 이용, 중앙상담 담당자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진실한 결혼이긴 했으나, 영주권을 획득할 당시에 별거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주권 취소 사유가 사기라는 이유로 성립되진 않는다.

영주 자격을 취소할 것이라는 공지를 받은 경우, 이를 반박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만일 취소 공지서에 취소가 정당하다는 이민국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 그리고 이민 판사 앞에서 재판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누락되었다면, 해당 취소 절차는 부적격 판단을 받게 된다. 또한, 취소 공지서에는 이민국의 취소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을 서면으로 취소 공지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취소 공지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취소 공지서에 있는 내용을 모두 인정하게 되면, 영주자격 취소 주장은 확정이 된다. 이 경우 이민국은 등기 우편으로 취소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전달하게 되고, 근처 이민국에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라는 안내를 하게 되며, 이 결정은 상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된다.

만일, 이민국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장에 반박하거나 이민 판사앞에서 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주장한다면, 이민국은 이민재판에 해당 건을 송부하여, 이민 판사가 해당 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민 판사의 결정은 상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후 영주 자격의 취소가 확정된다면, 추방재판에 회부되고 재판 출두 명령이 내려져서 추방이 확정되게 된다.

영주 자격의 취소가 확정되면, 자격이 취소된 영주권자의 영주권으로 인해 과거 이민 혜택을 받은 제삼자의 승인도 함께 취소된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여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았다면 그 배우자의 영주권도 함께 취소된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민
송주연 변호사

영주권 자격 무효

자격 취소 진행 시 이유 명시된 공지서 전달...반박 기회 보장

문: 영주권을 한번 획득한 후 자격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혹은 영주권자도 추방에 회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영주권자가 영주권 획득을 했다고 하여 추방에 회부되지 않거나 영주권 자격을 취소당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영주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해당 조 영주권 승인이 되지 않았어야 했거나,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중대한 범죄 기록이 생기는 경우라면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추방이 될 수 있다. 만일, 영주권자가 이미 된 이후에 발생한 일로 인해 영주권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이 경우는 영주권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추방 재판에 회부하여 추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영주권자의 영주 자격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

는 방법의 하나로 취소하고자 하는 공지서를 전달해야 하며, 영주권을 획득한 후 5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민국에서 전달되는 영주권이 취소되어야 하는 공지서에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기본 정보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자격이 애초에 없었다는 판단을 이민국에서 하게 된 배경 정보 기재 ▶이민국의 판단을 반박할 수 있는 답변을 제출할 기회를 준다는 내용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는 이유를 뒷받침해 주는 관련 법과 규정이 명시 ▶취소 공지에 적힌 내용을 반박할 경우 어떤 선택이 있는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만일, 사기 행각이 드러나서 영주권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라면 이 내용이 취소 공지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사기 결혼으로 인해 영주권을 획득한 사실이 드러나 영주권 취소가 되는 경우라면, 영주권을 획득하는 시기에 진실한 혼인관계가 아니거나 사기 결혼이었다는

중앙상담실은 건강·법률·세무·보험·가정·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e메일(nyopinion@koreadailyny.com), 전화(718-361-7700)를 이용, 중앙상담 담당자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진실한 결혼이긴 했으나, 영주권을 획득할 당시에 별거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주권 취소 사유가 사기라는 이유로 성립되진 않는다.

영주 자격을 취소할 것이라는 공지를 받은 경우, 이를 반박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만일 취소 공지서에 취소가 정당하다는 이민국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 그리고 이민 판사 앞에서 재판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누락되었다면, 해당 취소 절차는 부적격 판단을 받게 된다. 또한, 취소 공지서에는 이민국의 취소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을 서면으로 취소 공지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제출돼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취소 공지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취소 공지서에 있는 내용을 모두 인정하게 되면, 영주자격 취소 주장은 확정이 된다. 이 경우 이민국은 등기 우편으로 취소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전달하게 되고, 근처 이민국에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라는 안내를 하게 되며, 이 결정은 상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된다.

만일, 이민국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장에 반박하거나 이민 판사앞에서 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주장한다면, 이민국은 이민재판에 해당 건을 송부하여, 이민 판사가 해당 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민 판사의 결정은 상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후 영주 자격의 취소가 확정된다면, 추방재판에 회부되고 재판 출두 명령이 내려져서 추방이 확정되게 된다.

영주 자격의 취소가 확정되면, 자격이 취소된 영주권자의 영주권으로 인해 과거 이민 혜택을 받은 제삼자의 승인도 함께 취소된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여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았다면 그 배우자의 영주권도 함께 취소된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